

창원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가단1068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지안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10. 18.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9,780,000원, 피고 C은 3,914,9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24. 2. 20.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D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피고 B: 1,978만 원, 피고 C: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필리핀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원고는 2024. 2. 20. D로부터 원고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416만 원을 입금받고 D에게 폐소화를 환전해주었다.

다.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피해금액이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4. 2. 24.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지급정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있는 23,694,963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3. 8.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2024. 5. 9. 피고들에게 채권소멸사실을 통지하고 피해환급금 결정을 하여 2024. 5. 24. 이 사건 돈 중 1,978만 원은 피고 B에게, 3,914,963원은 피고 C에게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전을 해주고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을 받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액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돈이 환급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돈은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이득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9,780,000원, 피고 C은 3,914,96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특별법에 정한 지급정지, 채권소멸,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돈이 피해환급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결정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결정 등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돈을 취득한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이 특별법에 따라 소멸될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법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 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감독원 회신(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돈이 피해환급금으로 모두 출금되었는데, 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금융감독원은 “유선 상담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신청한 이의제기가 반려되어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소멸된 금액이 환급처리된 경우 계좌 명의인은 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구제 신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생략) 등으로 문의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융감독원에 피해환급금 결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돈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 정식으로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답변도 “원고가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라.”는 법적 조언일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일 뿐이고, 금융감독원이 그러한 입장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소멸채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러한 권리의 유무는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별지